

# TTA 표준화관련 지적재산권의 취급과 현안

윤종민 / 표준본부 전기통신표준부

## 1. 개요

20세기말의 가장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의 출범은 이데올로기는 물론 국경이나 지역의 구분조차 타파하는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법의 지배”를 실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조와 규범에 일대혁신을 가져왔다.

예컨대, WTO 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TBT(Agreemen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1994)와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투명성(Transparency),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최혜국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등의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보호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각국의 표준화작업과 관련된 IPR 처리에 수반되는 여러 의무사항을 부가하고 있다.

WTO와 때를 같이하여 태동하게 된 제1차 세계표준협력회의(GSCI, 멜버른 : 1994)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코자 PSO마다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IPR정책과 절차에 대한 계속적인 정보교환과 정보공유를 결의한 바 있으며 OTTAWA 및 경주의 GSC 후속회의에서도 일본 TTC가 제안한 PSO스간의 보다 강도있는 정책조화원칙에 동의한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지난 RA-'97(Geneva)에서는 ITU-R 권고관련 IPR확약 DB를 ITU-T의 처리절차에 따르기로 하고 나아가 IPR관련 공통의 범 ITU정책을 채택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ISO/IEC JTCI과의 연계까지도 기대되어지는 바이다.

본 문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정보통신표준화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1997-29호 : '97. 5. 24)이 발효됨에 따라, 개정된 TTA의 IPR 취급지침의 내용과 최근의 IPR 처리 사례를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 2.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IPR 취급지침 개정

정보통신표준화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 1997-29호, '97. 5. 24)의 제정으로 전기통신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던 TTA의 업무영역이 정보기술을 포함한 정보통신 전분야로 확대, 강화됨에 따라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취급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1995-129호, '95. 10. 17)이 폐지되고 아래의 전문 15조 부칙 3조로 구성된 IPR 취급요령(제1차 정보통신표준총회, '97. 7. 3)이 새로이 제정됨

- \* 제11조 : IPR의 명시
- \* 제12조 : 표준제정후의 IPR취급
- \* 제13조 : 협약서 관리
- \* 제14조 : 책임의 소재(면책조항)
- \* 제15조 : 위임사항

### 부 칙

- 제1조 : 효력발생
- 제2조 : 경과조치
- 제3조 : 준용규정

### 별 지

- 제1호 : 표준관련 IPR인지 통보서
- 제2호 : 표준관련 IPR취급 협약서

### 전문 구성

- \* 제 1조 : 목적
- \* 제 2조 : 용어정의(적용범의)
- \* 제 3조 : IPR의 통보
- \* 제 4조 : 협약서 제출
- \* 제 5조 : 협약서 검토
- \* 제 6조 : 표준화추진
- \* 제 7조 : 표준화중단
- \* 제 8조 : 실시조건의 검토
- \* 제 9조 : 자문위원회
- \* 제10조 : 자문의 처리

정보통신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취급에 관한 신·구 규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성의 퇴보임. 즉 국가기관인 정보통신부의 고시로 국가표준(KCS, KIS)을 대상으로 한 지적재산권 취급규정은 사실표준화 나아가 시장표준화 하고 있는 정보통신환경하에서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더욱이 WTO 체제의 출현에 따라 책임부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어 민간 표준화기구인 TTA로의 정책 전환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음.

(표 1)은 신·구규정의 주요 차이점을 대비

(표1)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IPR 취급에 관한 신·구 규정의 주요 차이점

구 분	IPR 취급지침(MIC, '95)	IPR 취급요령(TTA, '97)
대상표준	국가표준(KCS, KIS)	단체표준(TTAS)
IPR범위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컴퓨터 프로그램 및 S/W, Data Base)
IPR취급시기	IPR 인지 즉시	표준화과제 채택 이전
협약서 검토	검토주체만 명시	검토주체 및 검토 세부사항 명시
자문위원회	언급없음	신설 : 법률적 검토위주 (IPR 및 허용조건 판단)
별지 양식	IPR 취급협약서	IPR 인지통보서 신설 IPR 취급협약서

(표2) 주요 표준화 기구별 IPR 정책 비교

항목 \ 기구	ITU	ETSI	T1	TTC	TTA
IPR 규정	Statement on TSB Patent Policy	ETSI IPR Policy and Undertaking	Guideline for Implementation of the ANSI patent policy 준용	“공업소유권등에 대한 기본지침”과 TTC 공업소유권 등에 있어서의 기본지침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요령 적용범위
담당부서	ITU-T TSB (ITU-R 공조)	ETSI(사무국장)	사무국	사무국/지침위원회	사무국
적용범위	전세계	회원	미국	일본	한국
기본원칙	o무상공여 o합리적 내용과 조건	oIPR 포기 o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	oIPR 포기 o무상공여 o불공정하지 않고 비차별적인 합리적 조건	o무상공여 o적절한 조건 하에 비배타적으로 허용	o무상공여 o합리적 조건하에 비배타적으로 허용
제출서류	Written Statement	IPR Undertaking 서명	Statement	확인서	확약서
조사/연구	ITU-T TSAG	IPRC	T1AG	IPRC	기획전략특별위원회

한 것이며, (표 2)는 국제 표준화기구와 TTA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개괄 비교 작성한 것임.

### 3. IPR 취급 현황

TTA에서는 '97년 상기의 IPR 취급지침에 의한 5건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IPR 처리사

례가 있었으며, 현재 전화기자관 한글배열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처리 등이 진행중임.

5건의 IPR 처리사례에서는 각각 합리적 조건하에 비배타적, 비차별적인 IPR 실시가 허용되었으며, TTA는 IPR 권리자로부터 표준과 관련된 확약서의 접수는 물론 MOU의 체결로 표준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음.

(표3) '97년도 IPR 취급 현황

번호	표준명	관련 IPR	IPR처리	비고
1	고속무선호출 통신규약 (KICS 305 : '97. 3. 21)	모토로라 소유의 11개 특허	- 비배타적 합리적 조건의 확약서 제출('96. 5) - TTA와 모토로라간 양해각서(MOU) 체결('97. 2)	KICS에 IPR 관련 사항 명기
2	800MHz대 디지털 이동 전화 무선 인터페이스 (TTA.KO-06.0003 : '97. 7. 3)	퀄컴 소유의 47개 특허	- 비배타적 합리적 조건의 확약서 제출('97. 3) : 필수 IPR로 판명된 7건만 수용 (전파통신분과위원회결정 : '97. 6)	TTA 표준에 IPR 관련 사항 명기

번호	표준명	관련 IPR	IPR처리	비고
3	디지털 CDMA 셀룰라 시스템 음성부호화기 (TTA.KO-06.0012 : '97. 7. 3)	퀄컴 소유의 6개 특허	- 비배타적 합리적 조건 의확약서 제출('97. 5) - TTA와 ETRI간 MOU 체결('97. 8)	표준제정후의 IPR 처리로 관련사항 표준에 명기없음
4	11.7GHz~12.2GHz 주파수 대역의 위성방송 송수신 정합표준 (KICS 286 : '97. 3. 21)	ETRI 소유의 1개 특허 (무궁화 위성방송의 송수신기 정합방법)	- 비배타적 합리적 조건 의 확약서 제출('97. 7) - TTA와 ETRI간 MOU 체결('97. 8)	TTA 표준에 IPR 관련사항 명기
5	디지털 위성방송 제한 수신 정합 잠정 표준 (TTA.KO-07.0009:'97. 8. 13)	ETRI 소유의 4개 특허		

(표4) '98년도 IPR 처리계획

관련 표준명	IPR 소유현황	처리에정시기	비고
○ 전자식 전화기를 이용한 문자입력코드(개정)	한국통신외 14명 (특허 20건, 실용신안 2건)	'98년 하반기	확약서 기제출 (IPR 협상준비)
○ 양방향 무선호출 통신 규약	MOTOROLA, NEXUS, GWcom	'98년 하반기	IPR 인지 (표준안 제안 접수중)
○ CDMA 방식을 이용한 디지털이동 전화 시스템의인증알고리즘 표준	ETRI 1, SK텔레콤 4건	'98년 하반기	확약서 기제출
○ IMT-2000 관련 표준	미확인 IPR 다수존재	'98년 하반기	확약서 요청중

#### 4. IPR 관련 향후 추진 방향

앞서 소개한 IPR 처리사례의 누적으로 인한 경험의 습득에도 불구하고, IPR 자체가 가지는 국가 혹은 지역적 특수성과 정형화할 수 없는 표준구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많은 보완과 연구의 노력이 필요함.

TTA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IPR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토가 진행중임

- IPR 자문위원회 구성 : 표준화전문가에 국한되지 않고 IPR 취급 관련(첨부 1 참조)법률적 혹은 경제적 자문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 구성요건 필요

- IPR 검토 및 협상기준 : 현행 분과위원회의 소관인 IPR 검토 및 협상,(첨부 2 참조) 관련조직의 구성 등에 있어 정형화되고 투명화된 원칙마련 및 경험축적 필요
- IPR 관련 DB 구축 : IPR 협약내용 및 처리상황 등을 DB화 함은 물론 관련 IPR 검색 및 타 표준화기구와의 연계 목적

#### 5. 결 론

이상으로 “정보통신표준화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지침”이후의 IPR 취급과 관련된 TTA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였으며, 최근 국내에서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실증을 통한 이상적인 IPR 정책마련에 부단한 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하는 바이다.

실제로 각 표준화기구가 취하는 IPR 정책은 표준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면허허여를 유도하는 동일한 방향이긴 해도 기구 및 국가의 특성상, 예컨대 지역적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없는 ITU의 선언적, 호혜적 입장고수라던가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둔 ANSI 및 지역 표준화기구의 특성상 역내 국가들의 기술공동소유와 역외 국가들에 대한 기술보호라는 양면전략의 전형이랄 수 있는 ETSI의 정책방향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정책강도와 접근방식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대다수의 분야에서 기술우위에

있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선진 주요기구의 정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시기와 정도 등을 조절함으로써 ETSI와는 역으로 국내적으로는 기술보호 등을 위한 지적재산권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외국의 특허기술을 비차별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하는 일면과 최근의 IMT-2000표준화와 같이 주요 핵심기술에 있어 국제표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적극적인 국제표준 수용의 자세를 보이는 등의 때로는 방어적,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모하는 탄력적인 정책운영이 필요하고 민영화, 행정간소화 및 효율화의 추세에 따른 국가와 민간부문의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아울러 WTO의 GLOBAL환경하에서도 타 표준화기구와의 IPR 관련 정보의 교환 및 표준구현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될 때 정보통신표준과 IPR을 조화롭게 합일시키는 노력은 그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 [첨부 1]

### IPR 자문위원회 구성(안)

#### 1. 목 적

- 가.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의 취급에 관한 법률적 자문기구의 필요
- 나. WTO의 IPR 정책에 부응하는 안정적이고 공신력있는 표준위상의 정립 요구
- 다. IPR 자문기구의 활동으로 사무국 및 위원회의 비전문성에 대한 부담 감소

#### 2. 근 거

정보통신표준화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요령  
(제1차 표준총회 : '97. 7. 3) :

제9조(자문위원회) ① 협회총장은 표준화추진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검토와 실시조건등의 판단에 필요한 자문이나 법률적 검토를

위하여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3. 임 무

- 가. 협회 지적재산권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
- 나. 지적재산권 취급에 관한 제도 개선
- 다. 분과위원회가 요청한 검토결과의 적정여부 판단
- 라. 지적재산권 취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법률적 자문

#### 4. 구 성

- 가. 위원 수 : 5인 이상 10인 이내
- 나. 위원 자격
  -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전문가
  -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

## 5. 운영

- 가. 자문 방법 : 회의 또는 서면자문(경미한 사안)
- 나. 회의 소집 : 자문필요시 협회총장의 요청으로 개최(부정기)
- 다. 수당 지급 : 출석실비 및 자문실비 지급
- 라. 운영 규정 : 의장단 구성 및 회의운영사항 자체 결정
- 마. 의무 사항 : 자문과정에서 습득한 IPR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 [첨부 2]

###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세부요령(안)

1998. 6.

제 1 조(목적) 이 세부요령은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5조에 의거 지적재산권의 취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정의) 이 세부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다음 각 호는 요령에 정의된 것으로 준한다.

1. 필수 지적재산권 : 표준화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기술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지적재산권의 침해없는 표준에 따른 장비 및 방식의 제조, 사용 또는 운용 등이 기술적 이유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즉, 표준이 오직 어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적 해결에 의해서만 구현되어질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필수적

인 것으로 간주됨

2. 지적재산권의 기술적 가치 :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기술적 가치란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기술혁신 등으로 표준에의 요구 증대와 신속성이 필요시 되는 현실에서 지적재산권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성 등의 질이 표준에 실현되어 기술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공공성을 충족시킬 정도의 가치 있음을 의미함
3. 지적재산권의 실시조건 : 지적재산권의 실시란 지적재산권자의 소유에 속하는 특허발명 등을 일정한 목적(장비 및 방식의 제조, 사용 또는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조건이란 표준이 용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의 실시를 가능케 하는 지적재산권자의 요구사항으로서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안에서만 유효함

제 3 조(지적재산권의 확인) ① 협회총장은 표준제정신청 접수시 제안자로부터 당해 표준안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정보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협회총장은 표준화작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표준화과제 채택시 표준총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표준화과제 채택후에는 사업참가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인지 통보 요청을 할 수 있다.

제 4 조(확약서 검토) ① 협회총장은 확약서가 제출된 경우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요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검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분과위원회 의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속히 협회총장에게 통보한다.

제 5 조(특허검토팀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

원회 의장은 제5조의 검토결과 지적재산권의 실시조건이 합리적 조건하에 비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실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지적재산권자와의 협상을 위하여 요령 제8조제2항의 특허검토팀을 해당 연구위원회 등에 또는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특허 검토팀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연구위원회 등의 의장
2. 해당 연구위원회 등의 위원중 관련 기술분야 및 지적재산권 실무자로서 연구위원회 등의 의장이 추천한 자
3. 해당분야 지적재산권 전문가로서 분과위원회 의장의 요청으로 협회총장이 위촉한 자

③ 특허 검토팀의 의장단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표준화운영규정 연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특허검토 및 협상) ① 특허검토팀은 제5조제1항의 검토 및 협상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적재산권자와 표준사용자간에 의해 달리 협의되지 않는 한 합리적 조건은 금전적 대가를 위한것이어서 함
2. 지적재산권의 실시는 해당 지적재산권의 전기간을 통하여 허용되어야 함
3.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표준사용자에게 허용된 실시조건들은 차별이 없도록 해야함

② 특허검토팀 의장은 제1항의 검토 및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여 검토위원 및 협상 당사자의 확인 후 분과위원회 의장에게 송부한다.

③ 분과위원회 의장은 제1항의 검토 및 협상 결과, 지적재산권의 실시조건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협회총장에게 자문위원회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적재산권 취급에 관한 제도 개선
2. 분과위원회가 요청한 검토결과와 지적 여부 판단
3. 지적재산권 취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법률적 자문

② 자문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보통신 표준화 및 특허행정, 법률실무 전문가로서 협회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협회총장의 요청으로 개최하며,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협회총장은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은 자문을 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지적재산권 관련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할 의무를 지닌다.

⑥ 의장단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자문의 처리) ① 협회총장은 자문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해당 분과위원회에 통보하고, 분과위원회 의장은 해당 연구위원회 또는 특허검토팀에 요령 제10조에 의한 후속조치를 지시한다.

② 협회총장은 해당 표준안이 표준총회에 상정되는 경우 요약서 및 제1항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조(양해각서 체결) ① 협회총장은 제8조제1항의 후속조치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표준안을 표준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지적재산권자와 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사본을 표준총회 상정시 첨부 하여야 한다.

② 협회총장은 표준발간시 제1항의 양해각서 체결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TTA